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4th March 2013

- ▶ WHERE IS GRACE CHANG?:
디딤돌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AEO 인증 지원사업의 중요성 증대와
관세사의 역할 제고
..... 3
- ▶ FTA NEWS:
미-EU FTA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
- ▶ VOICES FROM THE FIELDS:
물류의 중심으로 재 부상하는 김포공항과
신한의 역할
.....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6
- ▶ CUSTOMS PRECEDENT ㉔
..... 7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디딤돌



장승희
 대표 관세사

지난 월요일에 대한민국의 제 18 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가지 핵심 국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제부흥과 문화융성! 이 둘은 최종목표인 국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새 대통령과 그 정부가 5년 동안 이루어 갈 정책들이 국민행복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걸림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누군가 내게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내가 남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의 걸림돌은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에는 걸림돌로 생각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 때에 결국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사』를 쓴 Thomas Carlyle의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 호의 Cover Story 는 기업들의 AEO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정부와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EU 간에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협상 타결 시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꾸준히 분석하며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그 영역이 위축되었던 김포공항이 새로운 영역을 찾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의 자회사인 신한인비스타는 김포공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사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은 새로운 날이기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그 새로움이 5년을 주기로 하기에 영향력 및 중요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일들을 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합니다. 신한관세법인 및 신한인비스타도 고객들께 디딤돌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FTA News-

AEO 인증 지원사업의 중요성 증대와 관세사의 역할 제고



이 동 현 관세사
dh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사
- FTA 컨설팅
- FTA 활용 컨설팅

Voices From The Fields-

물류의 중심으로 재 부상하는 김포공항과 신한인의 역할



감 동 기 관세사
dkka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신한관세법인 김포 지사장
- 신한인비스타 팀장
- 듀폰 한국 IBM 등 다수업체 자율심사 수행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Customs Precedent ㊦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AEO 인증 지원사업의 중요성 증대와 관세사의 역할 제고

최근,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AEO 공인인증 획득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AEO란, 종합 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말하는 것으로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하며,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간소한 통관절차, 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공여 받을 수 있다.

관세청과 사단법인 한국 AEO 진흥협회는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AEO 공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하였다. 2월 18일 역삼동 삼성 호텔에서 '2013년 중소기업 AEO 공인인증 지원사업 협약체결식'을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 기업대표 및 컨설팅 기관 대표 등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장기화, 원화 강세 등 국내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AEO 진흥협회 등이 AEO 공인인증 획득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고, 장흥기 AEO 진흥협회 본부장 또한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 지

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24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관세사회에서는 국내 수출입업체에 대한 AEO 인증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관세사 인력풀을 확보함으로써 인증과정에서 AEO 컨설팅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더욱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AEO 인증 컨설팅을 위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현황 조사를 통하여 총 49명의 관세사를 컨설팅 인력 POOL에 등재하였으며 수출입업체 등이 관세사회에 요청할 경우 등록된 관세사의 소속지역과 프로필, 컨설팅 실적 등이 기록된 인력 POOL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풀을 활용해 해외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AEO 컨설팅과 교육 등에 이번 인력 풀을 활용해 수출입업체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41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09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과 자금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올 상반기 중 체결예정에 있으며 AEO

가 본격 체결될 경우 현지 거점이 취약한 우리나라 AEO 중소기업의 수출 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AEO 인증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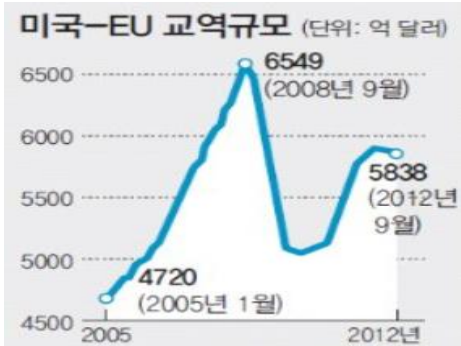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AEO 인증 지원사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사는 현재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AEO 공인인증 지원사업에 등록된 30개 중 27개 컨설팅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수출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그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본 신한관세법인 역시 다양한 업종의 AEO 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세관과 자체적으로 AEO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업체의 원활한 AEO 인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헌

dhlee@customsservice.co.kr

미-EU FTA 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 파이낸셜타임스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EU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 EU 양국은 2013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2014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역규모가 합하여 연 5838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의 FTA 협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EU FTA의 기대효과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 상공회의소는 5년 안에 12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유럽 연합도 매년 국내 총생산(GDP)을 0.47%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간에 오가는 대부분의 무역 관세는 3% 미만인 불과하지만 워낙 교역 규모가 큰데다 비관세무역장벽 제거, 법적 기술적 규제 표준화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양쪽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업부문이 최대 난관

미국과 EU가 이처럼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EU FTA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협상

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완화, 프랑스 등 농업생산품 수출국가의 농가보조금 문제 등의 이슈는 10여년간 양국의 협상을 가로막아 온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EU,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적을 거라 예상되고 두 거대 경제권의 FTA로 인한 무역활성화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있다.

- FTA 선점효과의 희석 우려

미-EU FTA로 인해 미국, EU와 FTA를 기체결한 우리나라의 선점효과가 희석되리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해 관세철폐 등 FTA의 혜택을 누려왔던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군은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더 큰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 장벽 가능성

뿐만 아니라, 미-EU FTA 체결로 식품 위생기준, 화학 자동차 의약부문 안전 규제, 지적재산권 등 기준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향후 세계경제의 '표준'으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후발국들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중국경제의 침체 가능성

한편, 미국과 EU의 FTA는 최근 경제대

미국·EU FTA 이뤄지면 (2012년 기준)

• 통합 GDP 33조2600억 달러

EU:17.61조 달러 미국:15.65조 달러

기대 효과

• 교역 증가 → 91억~274억 달러

• 성장률 상승 → EU 0.47%, 미국 1.33%

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며 실제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일정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가 위축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EU FTA 그 이후를 대비해야

미-EU FTA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양측이 합의하면 세계 무역 질서는 이에 편승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EU 양쪽과 FTA를 발효한 상태인 우리나라는 두 경제권 사이의 FTA가 체결되기 전에 한국산 제품의 무역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영토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한 중국-일본과의 통상협정을 추진하여 향후 미-EU FTA라는 거대한 이슈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dhlee@customsservice.co.kr)

물류의 중심으로 재 부상하는 김포공항과 신한역의 역할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제 1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개항한지가 올해 (2013년)로 13년이 되었다. 2001년 3월 29일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하여 현재 까지도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부분에서도 그 규모나 처리상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 예전의 김포공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화물처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이러한 물량들을 김포공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상이 안갈 정도이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졌던 김포공항이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

1. 물류동향

현재의 물류는 점점 더 많은 부분을 Outsourcing 하고 있다. 자가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던 것들이 운송회사에 외주를 주었고 외주만 주던 것이 물품의 보관과 운송을 같이 처리하게 되는 3PL로 발전되었으며 3PL을 넘어서 물류관련 행정업무까지 포함된 개념인 4PL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3PL과 4PL은 모두 외부업체에서 물품의 보관과 운송을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화주의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화주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2. 물류거점으로서의 김포공항의 위치적 이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류가 3PL, 4PL로 점점 발전되면서 물품의 관리와 배송 그리고 배송에 용이한 보관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수도권에 최종소비자들을 고객층으로 두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김포공항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서울시내에 이렇게 큰 물류단지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김포국제공항 화물분류장으로 사용될 만큼 큰 화물청사와 올림픽대로와 외곽 순환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망, 컨테이너화물들의 수용능력과 운송편의성 그리고 서울시내에

서 지하철로 한번에 올 수 있는 교통 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의 하기 운송지역으로 인천공항 영업용보세창고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없이도 물품을 보세상태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는 내륙운송비의 절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배송을 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 매년 영종도를 통과하는 높은 교통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김포공항으로 모든 물건을 하기반입하는 경우에 배송이 발생될 때는 인천보다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다.

3. 김포공항세관

김포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많은 화물과 관광객들이 옮겨갔지만 다시 근거리 지역(일본, 중국등)의 항공편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나리타공항이 있지만 하네다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서울로 business trip을 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보다는 김포공항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근거리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기도 김포공항으로 취항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단기간내에 취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김포공항세관도 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류단지에 세관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를 화주가 직접 확인하고 통관을 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의 법규준수도도 높일 수 있다.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휴대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입국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을 오가는 많은 관광객과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빠르고 손쉽게 입국하는 과정을 보면서 비교적 서울과 거리가 먼 인천공항보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화물은 사람과 똑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입국할 수 있으면 화물도 빠르고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물품들을 김포공항에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고객들을 상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와 신한인비스타보세창고

신한관세법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1년초 김포공항 화물청사에 신한인비스타라는 이름으로 보세창고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신한인비스타는 보세창고, 3PL 업무, 내국화물보관을 주로 영업하고 있다. 신한인비스타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화물관리와 배송비의 절감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 홈쇼핑업체등 화물배송이 중요한 업체들도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고 특수이 관리가 필요한 고가의 의류나 전자제품등이 김포공항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통관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다. 통관과 물품보관이 일원화되어 정확한 수입신고와 화물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김포공항주변의 활용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리모델링도 계획되고 있으며 주변의 기관을 이전시키고 물류단지를 좀 더 키우겠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감동기
(dkkam@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사유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표준화코드화하고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 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무역통계 오류 방지를 통한 국가신인도 향상 및 최상의 통관정보 지원

2. 주요 개정내용

□ 품명·용도에 대한 수출신고표준화·코드화

○ 비정형화되어 있는 품명·용도를 표준화·코드화함에 따라 수출신고시 이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추가

○ 수출신고가격은 국가의 무역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지표로 설정함에 따라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운영
-수출신고가격 정정의 최소화로 국제적 무역통계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신고지세관 물품검사 대상에 국제우편수출물품 추가

○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화물이므로 분실·바뀌치기 등의 가능성이 낮음

○ 이에따라 신고지세관에서 해당 우체국에 출무하여 물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고시조문 정비 및 기관명칭 등 변경내역 반영

○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고시 조문 정비, 기관명칭 변경내역·수출신고서식 등 일부 개정

3. 시행일자 : 2013. 2.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관세관련 주요내용

가.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안 제 41 조제 1 호)
학교 → 학교(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을 포함)

나. 재수입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개정(안 제 44 조)

[개정전] 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 99 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 101 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개정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2013 년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3-01-001]

1. 품명: TV STAND; AS STAND 5000-42/WS; 3139 1877 5361; 한국산
2. 결정세번: 7326.90-9000

중국산

2. 결정세번: 8517.70-3032

[결정 13-01-002]

1. 품명: Wireless Smart Care Camera; Network Camera; LW130W; 한국산
2. 결정세번: 8525.80-1020

[결정 13-01-004]

1. 품명: Gamma-CYCLODEXTRIN; CAVA MAX W8; U.S.A
2. 결정세번: 2940.00-1090

[결정 13-01-003]

1. 품명: WDM Module(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Module); SKT SCAN-WM Module;CWDM RT1-MXU(MXUR1);

[결정 13-01-005]

1. 품명: Electrochemical Impedance Analyzer or Potentiostat /Galvanostat; 모델명 : 2273, 263A, 263A-2, PARSTAT 4000, VersaSTAT
2. 결정세번: 9027.80-1000

[결정 13-01-006]

1.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꿀땅콩; PR.CHNA
2. 결정세번: 2008.11-9000

[결정 13-01-007]

1. 품명: Frozen pork front feet; GERM ANY
2. 결정세번: 0206.49-1000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하
bhlim@customsservice.co.kr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07 관 0023 2009.09.29)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하는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가산요소 중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채권, 채무 상계금액도 포함 하고 있다. 본 결정례에서는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할인 금액이 당사자의 채권, 채무에 대한 상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가산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사건개요(Facts)

1. 처분내용

- 1) 수입자(청구인)는 수출자로부터 칩테일 (쟁점 물품)을 수입함.
- 2) 해당 칩테일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와 수입자는 국내 광고판촉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예: 국내에서 신문 광고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광고비용 1,000,000 원 대하여 500,000 원을 수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000 원을 수출자가 부담)
- 2)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협상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광고판촉비용 중 수출자 부담 부분의 정산목적으로 기존 수입가격에서 병당 0.79 유로만큼 할인 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
- 3) 세관(처분청)은 할인액을 수출자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수입자의 채권)와 수입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수입자의 채 무)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 4)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2. 수입자(청구인)의 주장

- 1) 광고판촉비 부담 계약과는 별도로, 국내시장 약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의 가격협상에 따라 광고판촉비 전액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광고 판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가격에서 인하 하는 계약을 체결.
- 2) 상계금액이라면 채권(수출자 부담 광고판촉비 부담금)과 채무액(수입물품 대금)이 확정 되어야 하고 채권액(광고판촉비의 50%)확정을 위하여는 광고판촉비의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과정 없었음.
- 3) 광고판촉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 대금과 상계 하였다면 병당 할인액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당 일괄적인 할인액을 적용 하였음.
- 4) 따라서 동 할인액은 수입자가 부담한, 수출자 부담 광고판촉비와 수입대금의 상계 금액이

아닌 별도의 가격협상을 통한 정상적인 할인액 이므로 처분은 부당함.

3. 처분청의 주장

- 1) 수출자와 수입자는 다음 연도 판매계획을 위하여 회의를 통하여 'ACTION POINT'라는 문서로 정리 하며 해당 문서 내에는 광고판촉 비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가격협상으로 볼 수 없음
- 2) 따라서 동 할인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광고 판촉비와 수입대금의 상계액으로서, 이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

□ 쟁점(Issue)

쟁점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1)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으로 한다. (단서생략)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 ② 제 1 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2) 간접적인 지급액

관세법 제 30 조 2 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 ①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금액
- ②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 3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 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 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 ④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쟁점 검토

1) 상계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계를 위하여는 수출자 부담분을 확정하기 위한 광고판촉비 집계 및 정산과정이 있어야 하나 단지 'ACTION POINT' 내용 중에 정산 절차가 명시되었다는 점 만으로는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상계를 위한 채권, 채무액의 일치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할인 금액과 수입자의 채권이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동 할인 금액이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부담액과의 상계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정(Holding)

동 할인액은 가격 협상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 금액이며,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액으로 볼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